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사회복무제 도입에 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 1. 기자회견 순서 2P
- 2. 연대회의 성명서 3P
- 3. 제60차 유엔인권위 결의안(번역문) -5P
- 4.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보도자료) 7P
 - 5.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 10P

기자회견 순서

- 1. 연대회의 전체 입장 발표 한홍구(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2. 종교계 발언 정진우 목사
- 3. 학계 발언 이재승(건국대 법대 교수)
- 4. 법조계 발언 이석태(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5. 국회 발언 임종인(국회의원/무소속), 노회찬(국회의원/민주노동당)
- 6. 인권단체 발언 고은태(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 7. 성명서 낭독 출소한 병역거부자 + 양여옥(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사회복무제 도입 국방부 결정에 대한 연대회의 성명서

2007년 9월 18일 오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적인 사유 등으로 집 총(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군대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를 허용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내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이행이라는 국민의 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병역거부 분위기의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구한다는 차원에서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분야를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원칙을 강조하는 동시에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 사료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제공하는 방안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금까지 5년 넘는 시간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이 현실화된 것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감옥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서 국방부 입장을 대환영하는 바이다.

2002년 2월 4일 발족한 연대회의는 지난 5년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과 고통을 함께 해 오면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난 60년 동안 자신의 양심상 집 총을 할 수 없다는 병역거부자들이 꾸준히 존재해 왔으나 한국 정부는 남북분단, 국가안보를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출소 후에도 전과자 낙인을 찍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가했다. 군부독재 시절은 물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을 거치면서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최근에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은 총 1만 3천명을 넘어섰고 최근 5년간 수감된 사람만 해도 3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남북정세를 포함해 급변하는 안보환경, 인권존중에 가치를 두는 시민의식을 생각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그 동안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수감자들의 현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던 기존 입장에 비하면 매우 진일보한 결정이라 생각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국방부 발표 가운데 '종교적인 사유 등'이라는 표현은 모든 양심을 아우르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 믿는다. 어떤 경우에도 종교인과 비종교인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가 양심, 종교, 사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있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행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수정해서 이 제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첫째, 현역병보다 2배(현역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긴 복무기간은 징벌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유엔인권위원회(현재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안 기준에 맞지않는다.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에 따르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징벌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민정서상 복무기간이나 노동 강도에서 여타 사회복

무 분야와 차이점을 둘 수밖에 없다 해도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 국방부에서 말한 '소수자 인권 보호'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현역 복무 과정에서 병역거부를 결심하거나 예비군 훈련 거부를 결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현역 이등병이었던 강철민씨가 파병반대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결심하고 실형을 살았던 경험이 있으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서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안이 마련되는 동안 구속, 재판 중에 있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형집행 정지와 같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 역시 새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가 권고한대로 형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2004년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합헌 판결을 내릴 때도 장기적인 대안으로서 국회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또 2005년에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급변하는 남북관계까지 고려했을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더 이상 시기상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방안을 보면 복무 기간 2배, 엄청난 노동 강도, 집단합숙, 강력한 처벌의지 등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변화의 이면에는 1만 3천여 명이 넘는 수감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해 주십시오. 사소한 문제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대회의 역시 앞으로도 이 제도가 개선되고 병역거부자의 실질적인 인권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 이다.

2007. 9. 19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국제민주연대/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기족협의회/ 기독사회시민연대/ 녹색연합/ 동성애자인 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 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회당/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지지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호근 지지모임 평화사랑/ 여성해방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한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불교운동연합/ 전쟁없는세상/ 좋은벗들/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 의제 11(g)

시민적·정치적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공동제안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마케도니아*, 영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유엔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생명과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이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작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어 있음을 명심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본 인권위원회의 과거 결의 사항들, 특히, 모든 사람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유엔인권이사회 일반논평 22호에 규정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1998/77호 결의(1998.4.22.)의 내용을 상기하며,

- *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의 절차규칙 69의 3항에 의거
- 1.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모범사례를 편찬, 분석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 (E/CN.4/2004/55) 에 주목하다.
- 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 준 정부들에게 감사를 표하다.
- 3. 아직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자국의 현행 법률과 관행들을 본 인권위원회의 1998/77호 결의에 비추어 재검토하지 않은 국가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그러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 4.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사면 복권 등을 제공하고 그러한 조치가 법률과 관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후 평화건설 과정에 있는 국가들에게 권장한다.
- 5. 모든 적절한 출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모범사례에 관한 보충적 정보를 담은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에 요청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0층 전화 02-2125-9771 / 전송 02-2125-9779 / 언론홍보담당자 :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5년 12월 12일 <담당 인권연구담당관실 이발래 2125-9741>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18조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음과 병역의 의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국민의 필요적 의무임을 확인하였으며,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9건으로, 그 내용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하여 줄 것",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요청하여 줄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는 "매년 700여명의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고, 헌재의 결정으로 2005년에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여 줄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도록 임종인의원과 노회찬의 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원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을 살펴보면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의 기피)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15일 대법원은 "양심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로서, 국방의 의무(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로볼 수 없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입법적 권고"를 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배경하에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에게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의뢰하여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여부와 대체복무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검토를 하고, 2005년 10월에는 관련 기 관 관계자가 참석한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본 건을 검토하면서 헌법 제6조, 헌법 제19조,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 세계인권선언 제18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4조, 자유권규약 제18조 등을 판단의 준거로 삼았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부,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 대체복무제도의 도입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정신적 자유의 모체를 이루는 인간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의 내용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권)"가 포함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형사처벌'과 '단순한 병역의무의 이행'간에 양자택일식의 해결방법뿐인데,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와 제39조의 국방의 의무는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병역이외의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보면,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안보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되었고, 특히 국방부의 병력 감축계획과 감축규모 그리고 지난해 감축사실을 종합을해 보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설치되어야 하고, 대체복무의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대체복무의 영역은 사회의 평화와 안녕, 질서유지 및 인간보호에 필요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필요로 하는 영역 중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각국의 병역제도 현황

- 가. 징병제가 없는 국가
- (1) 징병제가 없는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91개국
- (2) 에콰도르,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이 최근 징병제를 폐지함
- 나. 징병제가 있는 나라
- 징병제가 있는 나라는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태국 등 85개국
- 다. 대체복무제도 도입 국가
- (1) 민간대체복무제도 도입 국가는 독일, 덴마크, 대만 등 31개국
- (2) 비전투복무제도 도입 국가는 크로아티아, 스위스, 등 5개국
- 라. 대체복무제도 미도입 국가
- (1)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처벌 기록이 있는 국기는 한국, 싱가포르, 터어키 등 8개국
- (2)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처벌 기록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국가는 북한, 페루, 수단, 이집트 등 40개국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쪽

배포: 제하

CCPR/C/KOR/CO/3/CRP.1 31 October 2006

워문: 영어

자유권규약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11월 3일 제네바

ADVANCED UNEDITED VERSION

규약 제40조에 의거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최종견해 대한민국

1. 자유권규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6년 10월 25일과 26일의 제2410차와 2411차회의(CCPR/C/SR.2410 과 2411)에서 대한민국의 제3차 정기보고서(CCPR/C/KOR/2005/3)를 심의하였고 2006년 11월 2일 2422차 회의(CCPR/C/SR.2422)에서 아래와 같은 최종견해를 채택하였다.

A. 들어가며

2. 위원회는 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보고서에 환영한다. 위원회는 고위급 대표들 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서면 및 구두질의에답변을 제공한 대표단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높게 평가한다.

B. 긍정적인 요소

3. 위원회는 파리원칙에 제시된 기준에 일치하여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

(중간생략)

C. 주요 관심 분야 및 권고

7. 위원회는 위원회가 채택한 개인통보에 대한 견해의 효과를 발효하게 하는 국내적 조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한다.

<번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1쪽

위원회가 위원회의 견해를 채택할 때, 당사국은 그러한 견해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절차를 즉각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8.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 한다. 그러나 규약 제22조 유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 유감이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14조 5항의 유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규약 의 제22조 유보를 철회할 것을 장려한다.

...(중간 생략)

17. 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¹⁾;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 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중간 생략)

- 22.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보고서의 제출기한은 2010년 11월 2일이다. 이번에 채택된 최종견해는 공표되고 일반대중 뿐만 아니라 사법부, 입법부 및 행정부에 넓게 배포될 것을 요청한다.
- 23. 위원회의 절차규칙 제71조 5항에 따라, 12, 13 및 18항의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추가정보를 1년 이내 제공해야 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차기 정기보고서에 권고 및 규약의 이행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기를 요청한다.

¹⁾ 예비군 복무대상자 중 병역거부자들이 소집 거부를 하여 한 번 처벌받은 후에도 계속 소집되어 반복 처벌받는 자들을 말함 - 번역자주